

제307회 임시회
2012. 3. 12.(월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
폐지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
폐지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2. 3. 12.(월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김영주 의원 외 6명
- 나. 발의일자 : 2012년 2월 23일
- 다. 회부일자 : 2012년 2월 24일
- 라. 상정일자 : 2012년 3월 6일

(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생략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는 체력측정을 통한 운동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도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1999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, 수탁기관인 충청학원으로부터 위탁운영기간 만료('11.12.31)에 따른 협약해지를 요청함.
- 체력측정 등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 필요성은 인정되나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건강측정의 신뢰도 저하, 장비개선 및 시설확보 예산과다 소요(10억원, 연 운영비 4억원), 건강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등과의 차별화 곤란, 적정 수탁단체 선정 어려움

등으로 센터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연병호)

금번 폐지조례안은 1999년부터 도민건강증진을 위해 설치·위탁운영해 오던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의 운영주체인 충청학원이 위탁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협약해지를 해 음에 따라, 체력측정 등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 필요성은 인정되나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건강측정의 신뢰도 저하, 장비개선 및 시설확보예산 과다소요(장비구입 10억원, 연 운영비 4억원), 건강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등과의 차별화 곤란, 적정 수탁단체 선정 어려움 등으로 센터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동 조례안은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 1999년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인천광역시, 충청북도 등 4개 자치단체에서 건강관리센터를 설립하였으나, 서울특별시만 국민건강관리협회에서 위탁받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인천광역시는 보건소로 기능을 합병하고 부산광역시는 폐지하였음.

충청북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센터의 필요성은 인정하나, 보건소 등 타 기관과의 기능 차별화가 없으며, 적정 수탁단체의 선정이 어려움, 도 직접 운영에 따른 과다예산 소요 등의 문제점이 예측되므로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를 폐지하는 것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